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447
------	-----

2023.3.2.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2월 1일, 서호연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3. 2.)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호연 의원)

1. 제안이유

-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함(안 제2조·안 제3조)
- 나.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개최를 규정함(안 제4조·안 제6조)
- 다. 의안의 제출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안건의 배부와 의견의 청취를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 마. 실무위원회를 규정함(안 제12조).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시·도경제협의회규정」¹⁾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됨.

나. 조례 제정의 배경

- 지역경제협의회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대통령령)에 따라 1991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현안을 협의하는 법정위원회로 설치·운영

1) 제9조(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①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조정을 위하여 각 시·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되었음.

- 그러나 2012년 경제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에 대한 각종 정책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희망경제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지역경제협의회는 폐지·흡수됨.
- 이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희망경제위원회를 통해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해 왔음.
- 그러나 최근 2년간 희망경제위원회의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음.
- 또한,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²⁾ 해당 조례의 폐지 조례안(서호연 의원 대표발의, 2022.10.17.)이 발의됨.
- 따라서 제정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하고, 희망경제위원회 폐지에 따른 입법 공백을 막으며, 자치구, 기업, 경제 분야 전문가 등의 참여로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됨.

2) 법제처 2010.2.1. 회신 09-0395 해석례.

다. 조문별 검토

(1) 지역경제협의회 기능(안 제2조)

- 안 제2조는 지역경제 관련 주요 시책과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다시 설치하고, 그 기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 ▶지역경제 관련 시·자치구·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이는 기획재정부 소속의 시·도경제협의회의 기능과 유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기능과도 차이가 없음(참고자료).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경제도 수출감소, 소비위축, 금리상승 등의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경제 상황 전반을 아우르는 심의기구의 필요성은 큼.
- 다만, 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던 희망경제위원회가 최근 2년간 전혀 개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협의회가 행정의 민주성·전문성 확보와 이해관계의 협의·조정 등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2)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안 제10조)

-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행정1부시장)과 부위원장(경제정책실장), 자치구 부구청장 외에 위촉위원으로 경제 관련 기관·기업체 대표와 부대표, 경제 전문가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3조).
 -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함(안 제6조).
 - 이 밖에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 간사(안 제5조), 의안의 제출·배부(안 제7조, 안 제8조), 의견청취와 회의결과 조치(안 제9조, 안 제10조) 등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 경제분야의 파급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부시장과 기업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과 중장기 계획 등을 논의하는 구조는 필요함.
-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³⁾에

3)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 등을 규정해야 함.

- 제정안은 협의회 운영을 비상설로 운영할 계획이나, 시·도경제협의회⁴⁾가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협의회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운영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협의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수(29명) 규모를 고려해 30명 이내의 구성보다는 필요 적정규모로 확대해야 함.

(3) 실무위원회(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협의회 상정 안건의 실무적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광범위한 협의회 업무와 심의에 앞서 실무자 간의 협의·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의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을 통해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제정안은 「시·도경제협의회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경제정책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경제협의회의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그동안 지역경제협의회를 대신해 서울시 경제·산업 전반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통합 수행해 온 희망경제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일부 기능이 협의회 등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일부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 용어 등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정의견
제2조(기능) 1.~5. (생략) 6. <u>기타</u>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기능) 1.~5. (제정안과 같음) 6. <u>그 밖에</u>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u>시장이 회의 개최 시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u> 중에서 시장이 <u>지명</u> 또는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 중에서 시장이 <u>임명</u> 또는 위촉한다.

1.~4. (생략)

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할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 (제정안과 같음)

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 광역자치단체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도	조례명	제정일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방법 등
1	서울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	행정1부시장	경제정책실장	필요시 수시소집
2	경기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7.15.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정기회 1회 임시회 수시
3	부산	부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92.01.15.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기회 2회 임시회 수시
4	대구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조례	97.01.17.	경제부시장	위원장 호선	정기회 2회 임시회 수시
5	인천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1.10.30.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기회 2회 임시회 수시
6	광주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96.02.17.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기회 2회 임시회 수시
7	대전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91.10.04.	시장	시장지명위원	필요시 수시소집
8	울산	울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97.07.15.	경제부시장	일자리경제국장	정기회 2회 임시회 수시
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13.01.07.	행정부시장	위원중 호선	정기회 1회, 임시회 수시
10	강원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	91.12.10.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정기회 1회, 임시회 수시
11	충북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2022.6.30.	경제부지사	경제통상국장	필요시 수시소집
12	충남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1.11.29.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기회 1회, 임시회 수시
13	전북	전라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조례	92.05.13.	정무부지사	일자리경제본부장	정기회 1회, 임시회 수시
14	전남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93.01.16.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정기회 2회 임시회 수시
15	경북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92.06.18.	경제부지사	업무담당실국장	정기회 2회 임시회 수시
16	경남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91.11.12.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정기회 4회(분기) 임시회 수시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2007.5.9	도지사	위원중 호선	정기회 2회 임시회 수시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협의회 운영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위원회 설치 규정에 맞춰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일부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 용어 등을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협의회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 수를 확대(30명→40명)함(안 제3조제1항).
-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5항).
- 협의회 운영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도록 수정함(안 제6조제2항).
-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 용어 등을 수정함(안 제2조제6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11조).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47
----------	--------

제안년월일 : 2023년 3월 2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협의회 운영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위원회 설치 규정에 맞춰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일부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 용어 등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협의회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 수를 확대(30명→40명)함(안 제3조제1항).
-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5항).
- 협의회 운영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도록 수정함(안 제6조제2항).
-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 용어 등을 수정함(안 제2조제6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11조).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3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회의 개최 시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명”을 “임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할”을 “제출하는”으로, “자를 당해 협의회”를 “사람을 해당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안 제11조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하고, “예산”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p> <p>1.~5. (생략)</p> <p>6. <u>기타</u>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u>시장이 회의 개최 시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u> 중에서 시장이 <u>지명</u> 또는 위촉한다.</p> <p>1.·2. (생략)</p> <p>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u>자</u></p> <p>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u>자</u></p> <p>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u>제출할</u>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u>자를 당해 협의회</u>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p> <p><신설></p>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p> <p>1.~5. (제정안과 같음)</p> <p>6. <u>그 밖에</u>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u>4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중에서 시장이 <u>임명</u> 또는 위촉한다.</p> <p>1.·2. (제정안과 같음)</p> <p>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u>사람</u></p> <p>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u>사람</u></p> <p>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u>제출하는</u>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u>사람을 해당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u>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p> <p>⑤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제6조(회의개최) ① (생략)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개최)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자치구·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2. 자치구의 부구청장

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위원회) 협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